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기업(주) 레미콘기사가 출근버스내에서 동료의 싸움을 말리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88-232호 88.9.19.기각)

재결서

재심청구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성명 : 김 ○ ○

소속 : (주)○○레미콘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처분 청구인 :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4.4.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주)○○레미콘 부천사업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7.8.14. 06:40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도중 피해되어 상병명 "1)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2)제5요추 척추 후궁 협부 결손(양측)"으로 요양중

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통근버스내서 동료근로자 이○○과 윤○○의 사적인 싸움을 말리다가 이○○에게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재해로서 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싸움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탑승한 통근버스가 급정거함으로 인하여 그 반동으로 넘어지면서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전의 쟁점은 청구인이 입은 재해가 업무상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8.7.13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7.19.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5.12. 오○○)
4. 요양신청서 사본(1988.3.24. 김○○)
5. 요양불승인 결정 통고문 사본(1988.4.4.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6. 진단서 사본(1988.3.24. 부천대성병원장)

7.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88.2. 박○○)
8. 재해발생 경위서 사본(1988. 주식회사 ○○ 레미콘 대표 박○○)
9. 문답서 사본(1988.2. 양○○, 김○○, 김○○)
10. 진술서 사본(윤○○)
11. 자술서(1988.8.9. 이○○)
12. 진술서(1988.8.11. 안○○)

13.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전의 쟁점은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레미콘 부천사업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7.8.14. 06:40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 도중 버스내에서 동료 근로자 이○○과 윤○○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병명 “1)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2) 제5요추 척추후궁 협부결손(양측)”의 부상을 입고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사적인 싸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로서 원처분청이 업무의 재해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근도중 동료 근로자 이○○과 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이○○에게 다가갈 때 이○○이 일어나면서 발로 청구인의 가슴을 참과 동시에 출근버스 운전기사 김○○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싸움을 말리는 청구인의 국부쪽을 걷어차는 순간 통근버스 운전기사 김○○이 차내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급정차를 하여 3미터 정도 뒤로 밀리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싸움을 한 이○○ 또한 급정차함

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87.8. 14. 작성한 재해발생 경위서를 보면 이○○이 멱살을 잡으며 발로 차 힘에 못이겨 뒤로 넘어져 심한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급정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목격자 양○○은 재해당일 06:40경 이○○이 중도에서 승차하여 앞좌석에 타고 있던 윤○○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므로서 싸움이 벌어져 청구인이 이를 말리다가 오히려 이○○과 싸우게 되어 서로 욕을 주고 받다가 빼스가 시청근처 정차 지점에 도착할 시 김○○와 이○○이 멱살을 잡고 엉키는 듯 하더니 김○○가 뒤로 나가자 빼스가 허리를 다쳤으며 재해발생 지점은 상시 정차하는 곳으로서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 김○○은 정차 지점인 시청부근 정차장에 정차시키자마자 뒷좌석에 있던 이○○이 김○○에게 욕설을 하므로 김○○가 쫓아가 맞붙어 싸우다 이○○이 발로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며 넘어질 당시는 차량이 정차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고소에 의한 김○○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피의 사건에 관한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이상의 각 진술내용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피의 사건 처분 결과와 재해장소가 상시 정차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 판단컨대, 청구인의 재해는 동료 근로자와의 사적인 싸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본 재해를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운수(합) 운전기사가 오후근무에 임하고자 출근하려고 자택을 나서다가 쓰러져
상병명 “뇌경색증(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성명 : 김 ○ ○

소속 : ○○운수(합)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 대전지방노동청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8.3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 불승인 적용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운수(합)택시 운전기사로서 1987.4.13. 15 : 00경 자택에서 당일 오후 근무에 임하고자 출근하려고 방문을 나서다가 쓰러져 대전 한방병원에 후송 진찰결과 뇌경색증(혈전증)으로 1987.4.13.부터 동년 7.3.까지 입원 치료하다가 1987.7.3. 대전 선병원으로 전원 치료중인 자로서 상병명 : 뇌경색증(뇌혈전증)이며, 기존질병 : 심장질환(심장비대, 심방세등)으로 원처분에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 김○○는 1983.7.19. ○○운수(합)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근로하였고, 1984년 및 1986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 심장비대증의 기준질병이 있었으며 또한 피재자를 치료한 대전한방병원 및 대전의원, 대전선병원의 주치의 소견에도 기준질환이 심장질환(판막증 부정맥), 심장비대, 심방세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뇌경색증은 기준질환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유발되었다는 소견이고 재해발생장소도 자기집으로서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택시운전기사로서 사규상 1일2교대 근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1일1교대(07 : 00~24 : 00)근무를 하고 사납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등 과로가 겹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 요양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및 청구이유(1988.1.12.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1.14. 대전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7.11.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오○○)
 4. 요양신청서 사본(1987.7.30. 김○○)
 5. 요양불승인 결정결의서 사본(1987.8.31. 대전지방노동청장)
 6.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7.8.28. 조○○)
 7. 진단서 사본(1987.8.24. 대전의원, 1987.8.28. 선병원)
 8. 건강진단 개인표 사본(1984년 및 1986년도 분)
 9. 문답서 사본(1987.8.26. 김○○, 1987.8.7. 조○○)
 10. 기타
-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는데, 청구인은 ○○운수(합) 택시운전기사로서 1987.4.13. 15 : 00경 자택에서 당일 오후근무에 임하고자 출근하려고 방문을 나서다가 쓰러져 대전한방병원에 후송 진찰결과 뇌경색증(혈전증)으로 1987.4.13~7.3.까지 입원 치료하다가 1987.7.3. 대전선병원으로 전원 치료중인 자로 원처분청

에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1984년도 및 1986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 심장비대증의 기준질병이 있었으며 피재자를 치료한 대전한방병원, 대전의원, 대전선병원의 주치의 소견에도 기준질환인 심장질환(판막증, 부정맥)심장비대, 심방세등이 확인되어 그 소견으로서 뇌경색증은 기준질환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도 “기준질환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임으로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1일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일1교대(07 : 00~24 : 00)근무도 자주하고 사납금 전액 납부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는등 업무상 과로 때문에 심장질환의 악화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질환의 발병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는 1987.4.13. 15 : 00경 자택에서 당일 오후근무에 임하고자 출근하려고 방문을 나서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전원하는 등 현

재까지 치료중에 있고,

둘째 : 피재자의 1987년1~4월까지의 출근부상 근무상황을 보면 매월 출근일수가 26~28일간 근무하며(2교대 근무)특별히 연장근로 등 계속근로 사실이 거의 없으며,

세째 : 피재자의 1984년 및 1986년도의 근로자 건강진단개인표상 “심장비대증”자로 확인되고, 또한 현재 치료한 대전한방병원, 대전의원, 대전선병원의 주치의 소견이 기준질환인 “심장질환(판막증 부정맥), 심장비대, 심방세등을 확인하고 그 소견이 기준질환의 악화로 뇌경색증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네째 :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기준질환이 악화되어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이다.

위와 같이 피재자의 발병원인이 택시운전기사의 특수 근로형태로 인한 정신적 긴장, 육체적 과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원인은 기준질환인 심장질환(판막증 부정맥, 심장비대, 심방세 등)에 기인하여 뇌경색증이 유발된것으로 보아 업무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